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요건

원고는 2005, 2006 사업연도에 수탁업체에 전산시스템 등 구축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업체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뒤, 구 조특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 제1호 나목 1) 마) 에 따라 수탁업체에 지급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하여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환급하였다가 ‘수탁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원고가 2006사업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 중 수탁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재위탁한 부분’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재위탁한 부분’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의 처분 중 일부만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i) 조세법률주의, (ii)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체제 및 입법연혁, (iii) 자기책임의 원칙, (iv)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① 수탁업체가 자신의 책임하에 재위탁을 하였는지 여부 및 ② 당해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였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① 쟁점과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도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은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기만 하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탁과 재위탁은 그 주체(수범자)가 다른바, 그 주체가 위탁자로 규정된 이 사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위탁의 개념에 당연히 재위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 위탁자에게 수탁업체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확인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법령에도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전산개발용역의 경우 융합기술개발로 하나의 기업이 모든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른 기업에 전산개발용역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② 쟁점과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문언 해석상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기만 하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연구개발용역이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와 계약에 따라 수탁업체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고, 수탁업체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최종 책임을 지므로 전담부서는 수탁업체가 보유하면 되고 재수탁업체까지 전담부서를 보유할 필요는 없다.』 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였고, 동 판결은 2014. 5. 2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조세감면요건의 경우에도 법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의미를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조 춘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13 | E-Mail. ccho@shinkim.com |
| ● 황인석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365 | E-Mail. i shwang@shinkim.com |
| ● 이민현 변호사 | TEL. 02 316 1639 | E-Mail. mhylee@shinkim.com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